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261
------	------

2017. 11. 29.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I 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1월 13일, 이창섭·박운기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4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】

- 제11차 기획경제위원회(2017.11.29)상정, 제안설명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수정안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역균형개발

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.

-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위원회 심의가 절차 이행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수 있으므로, 위원회의 대면심의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심의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따라서,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출석을 회의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10조제3항 중 “출석으로”를 “출석(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)으로”로 함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를 대면심의 방식으로만 운영하도록 하여 서면심의를 통한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려는 것임.

나.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회의 관련 규정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½이상 참여하고 개최한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는 기금

운용심의회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(제9조), 심의회의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제10조)

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기금운용 심의회의 운영)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과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는 서면회의 개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서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

다. 종합의견

-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최근 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서면 회의 개최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어 서면 회의 개최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위원회 운영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.

<연도별 기금운용심의회 개최현황>

구 분	개최 횟수(서면심의)			
	'14	'15	'16	'17.10
중소기업육성기금	3(1)	4(2)	6(3)	6(3)

-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경우 다른 기금운용심의회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회의 개최 횟수가 많은 편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특성상 세월호 지원 등을 위한 경제활성화 자금 지원, 메르스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지원, 송인서적 부도에 따른 피해업체 지원 등 긴급지원에 대한 수요가 잦아 출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.
 -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기금은 총 21개이며 2017년 기금운용심의회 회의 개최 총수는 77회이며(기금당 평균 3.6회 개최) 이 중 서면심의 횟수는 40건임(서면심사비율 51.9%).
- 따라서 모든 회의의 개최를 대면회의로 개회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기금운영심의회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운영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위원들의 출석이 저조한 경우 기금운영심의회 회의

가 부실화될 수 있고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잦은 중소기업
육성기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61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11월 29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잦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, “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”와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”에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10조 제3항 단서 규정을 신설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“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”와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”에만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 제3항)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3항 중 “출석(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)으로”를 “출석으로”로 하고 제10조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0조(기금운용심의회 의 운영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10조(기금운용심의회 의 운영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출석(회의 장소에 직 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 한다)으로 ----- -----.</p>	<p>제10조(기금운용심의회 의 운영)</p> <p>①~② (현황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출석으로 ----- ----- ----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긴급한 처리가 필요 하거나 경미한 사안 인 경우</p> <p>2. 천재지변이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 의를 할 수 없는 경 우</p>
<p>④~⑤ (생략)</p>	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기금운용심의회 의 운영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></p> <p>④~⑤ (생략)</p>	<p>제10조(기금운용심의회 의 운영)</p> <p>①~② (현황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</u></p> <p>2. <u>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</u>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